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(법률 제20036호, 2024. 1. 16. 공포, 7. 17. 시행)됨에 따라, 저수조 설치 신고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중 “제3조제30호 및 제31호”를 “제3조제31호 및 제32호”로 한다.

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로 하고,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3(저수조의 설치 신고)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고,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.

제22조의4(중전의 제22조의3) 제1항 중 “법 제33조제2항”을 “법 제3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3조제3항”을 “법 제33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의8서식 및 별지 제6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저수조 설치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7일	
신고인 (소유자 또는 관리자)	성명	건축물(시설)명			
	소재지	전화번호			
저수조 현황	<저수조의 재질 및 용량, 설치위치>				
	구분	용량(m³)	재질(콘크리트, FRP 등)	설치위치(지상, 지하 등)	
	저수조 1				
	저수조 2				
	저수조 3				
합계	총 m³(총 개)	-	-		
※ 건축물에 따라 저수조는 추가할 수 있다					
공사준공일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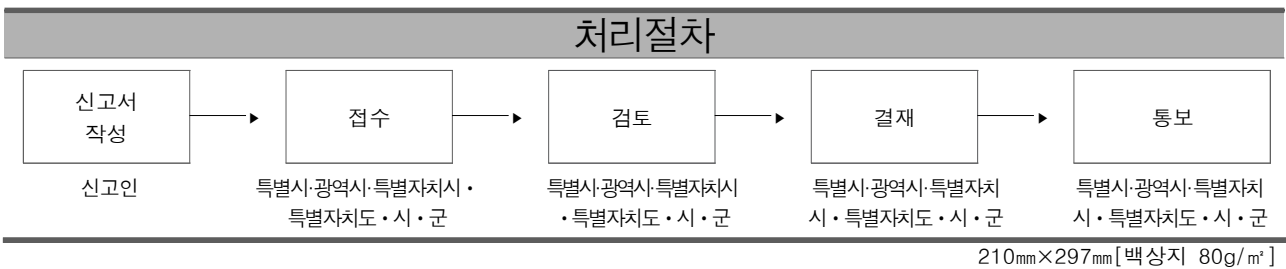
「수도법」 제3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 설치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구비서류	1.저수조 시공도면(1/200)	수수료 없음
기존 저수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작성방법	1. 이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준공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내용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. 2. 이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시공도면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.	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) 「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u><신 설></u>	제1조의2(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) ----- ----- 제3조제31호 및 제32호----- ----- -----.
제22조의3(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) ① <u>법 제33조제2항</u> 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(이하 “대형건축물등”이라 한다)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,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.	제22조의3(저수조의 설치 신고)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8 서식과 같고,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. 제22조의4(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) ① <u>법 제33조제3항</u> ----

② ~ ⑦ (생략) <u>제22조의4</u> · <u>제22조의5</u> (생략) 제23조(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)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<u>법 제33조제3항</u>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 1. · 2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 <u>제22조의5</u> · <u>제22조의6</u> (현행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와 같음) 제23조(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) ① ----- ----- --- <u>법 제33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